

2022년 1학기
[출석증빙서류 제출
메뉴생성 및 제출 안내(학생용)]

2022.03.

 **신한대학교** | 교무처 / 학사팀

▶ 출석증빙서류 제출 메뉴 생성 및 제출 안내

1. 교수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출석증빙서류를 학생들이 준비하여
사이버캠퍼스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진행(아래 매뉴얼 참조)

2. 학생은 * 기간 내에 출석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교수자에게
출결 확인

* 기간: 유증상 음성시 2일 이내, 격리기간 해제일 이후 7일 이내

1. 사이버캠퍼스 [출석증빙서류 제출] 게시판 학생 업로드

강의 개요

①

과목공지

질의응답

조별과제_치...

01321

유고결석 증...

출석증빙서류...

주차 별 학습 활동

출석증빙서류 제출 게시판

의심증상 및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한 유고결석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제출

제출 상황

제출 여부	제출 안 함
채점 상황	채점되지 않음
종료 일시	2022-06-21 23:59
마감까지 남은 기한	91 일 10 시간
최종 수정 일시	-
제출물 설명	▶ 댓글 (0)

② 과제 제출하기

2. 출석증빙서류 제출 게시판 증빙서류 업로드

출석증빙서류 제출 게시판

의심증상 및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한 유고결석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제출

증빙서류

①

첨부파일

파일의 최대 크기: 1GB, 최대 첨부 파일 갯수: 10

제목	최종 수정 일시	크기	유형
출석증빙서류 제출1.JPG	2022/03/22 14:05	12.9KB	이미지 (JPEG)

②

저장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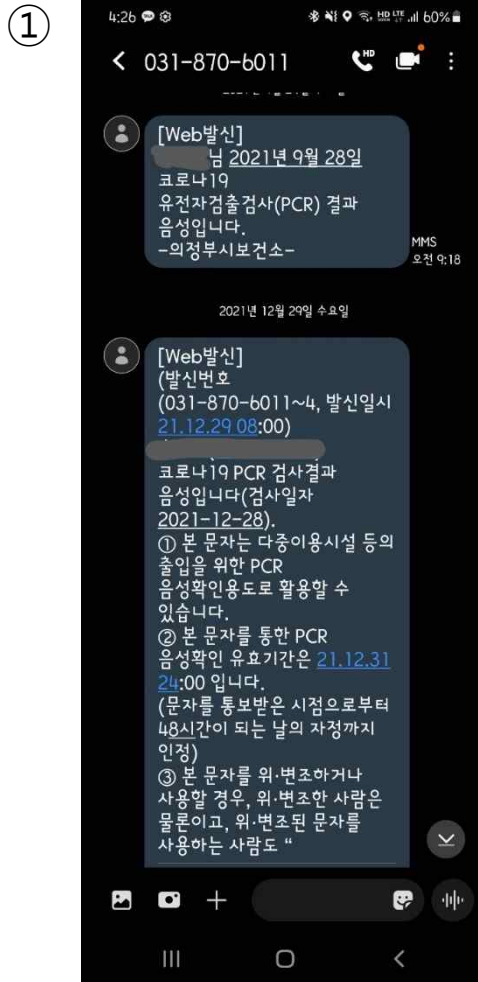
[저장] 버튼을 클릭 시 최종 과제 제출일이 업데이트 되오니 주의하세요.

① 첨부파일 : [출석증빙서류 업로드](#)

② 저장

3. 코로나 증상 및 확진 증빙서류 예시

가. 유증상 미확진시



②

서식 1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신청서 NO.

코로나19 검사신청서

검사일: 2022년 1월 3일

[굵은선 박스안을 검사대상자가 작성합니다.]

이름	주민등록 번호
전화 번호	성 별 ☒ 여(F) ☐ 남(M)
주소	비 고

검사 이유(1개만 선택)

☐ 방역패스용(음성확인서 발급)

☐ 본인 희망

※ 신청서 원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목적이 달성(시스템 입력 등)된 경우 파기

[접수처 또는 검사관리자가 작성합니다.]

검사 결과

☒ 음성 ☐ 양성 → (2차 비인두도말 PCR 시행 ☐)

*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2차 PCR 검사 시행 여부 표시

③

코로나19 검사의뢰서 [선별진료소 제출용]

의뢰기관	의뢰기관명	하나이비인후과	담당자	성명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28 3층 302호(호원동)		휴대전화	
환자	성명 (또는 진료번호)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위험요인

☐ 코로나19 의심증상을 가진 가족 또는 지인 접촉

☐ 직업상 접촉경 다수 접촉

☐ 기 확진자 또는 집단발생과의 연관 의심

☐ 기타()

증상

☐ 발열 ()

☐ 기침 ☐ 가래 ☐ 인후통 ☐ 호흡곤란 ☐ 근육통 ☐ 두통

☐ 오한 ☐ 후각 상실 ☐ 미각 상실 ☐ 기타증상()

검사방법

☒ 코로나19 ☐ 동시검사(코로나19+인플루엔자)

담당의사 소견지

상기환자 인후봉으로 내원하여 RT-PCR 검사결과 음성이었음니다.

상기 이유로 per의뢰드립니다.

발달의사: 김기영 (인)

위와 같이 코로나19 등 진단검사를 의뢰합니다.

2022년 01월 03일

의뢰기관장

선별진료소장 귀하

유의사항

1. 의뢰인은 「의뢰명」에 따른 의뢰기관이어야 합니다.

2. 환자 연락처는 검사 결과 회신이 가능한 번호여야 합니다.

처리 결과

의뢰서 작성 → 환자 전달 → 선별진료소 방문 → 검사 실시 → 결과 통보

의뢰기관 환자 선별진료소

나. 코로나19 확진시

①

[V] 입원 · [V] 격리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입원·격리 사유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로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및 의학적 처치를 위해 시설 및 재택치료를 받기 위함		
입원·격리 내용	입원일 · 격리시행일 2022-03-03		
	입원기간 · 격리기간 2022-03-03 ~ 2022-03-06		
	[] 병원 · 의원 [V] 자택 [] 시설		
	입원·격리 장소	자택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자택 병원/시설 주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택치료의 격리기간 후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추가적인 감염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해제일 이후 본 통지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Confirmed patients who have been released from quarantine according to the quarantine release criteria after the quarantine period of home treatment have no further concerns about the spread of infection, and this notice may replace the PCR negative confirmation after the release date. ※ 병상치료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및 격리일 연장의 경우 재발급 필수 2022년 3월 6일 의정부시장 			

②

진료확인서(재출용)			
병력번호 : 36976 년월호 : 2022-0305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입원			
통원	2022년 03월 14일부터 2022년 03월 14일까지 (1일간)		
실명증명자	03월 14일		
상기환자 감염 병원에서 시행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상 '양성'입니다. 코로나 19 감염 확진입니다.			
의사소견			
상기환자 감염 진료 내역임을 확인함. 발행일 : 2022-03-14 의사명 : 김기형 면접번호 : 77361 진료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원호로 228 3층 302호(충무동, 풍림프라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원호로 228 3층 302호(충무동, 풍림프라자) 전화번호 : 031-874-1175 하나이비인후과  ※ 병명이 필요하시면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은 기간안에 출석증빙서류를 반드시제출하고 교수자에게 출결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석증빙서류는 사진파일이나 스캔파일 혹은 캡처본 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사진은 깨끗하게 촬영하여 제출)

4. 출석증빙서류 제출 게시판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홈](#) > [2021 test topic](#) > [출석증빙서류 제출 게시판](#)

출석증빙서류 제출 게시판

의심증상 및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한 유고결석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제출

제출 상황

제출 여부	제출 완료
채점 상황	채점되지 않음
종료 일시	2022-06-21 23:59
마감까지 남은 기한	91 일 9 시간
최종 수정 일시	2022-03-22 14:06
첨부파일	 출석증빙서류 제출1.JPG
제출물 설명	▶ 댓글 (0)

①

제출한 과제 편집

①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 [제출한 과제 편집](#) 클릭하여 추가 업로드

② 저장